

##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「Boost-up 新기술 디자인 청년일자리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부산광역시와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디자인 전문인력 맞춤형 공급으로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의 자생적 생태계기반 마련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「Boost-up 新기술 디자인 청년일자리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07월 17일  
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

### I 사업목적

-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에 청년 디자인 전문인력 맞춤형 공급으로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분야의 자생적 생태계 기반 마련 및 지역경쟁력 강화

### II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부산지역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청년층의 안정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취업 인건비 지원 및 직무교육 등 지원
- 당해연도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4. 12. (인건비 지원 1년)
- 모집규모 : 부산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 3개사, 청년디자이너 3명
- 지원대상
  - 기업 :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
  - ※ 부산일자리정보망 - 마이페이지 - 업종 계열 1차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2차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(사업자등록증과 대조시 무관한 기업 배제)
  - 청년 : 부산 거주 (만 39세 이하)의 미취업 청년

- 지원내용 : 청년인재 연계, 인건비 지원(1년), 직무교육, 고용 유지 관리 등
- 주 최 : 행정안전부/부산광역시
- 주 관 :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

### III 지원내용

#### □ 지원대상

##### ○ 기업

- 부산지역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 3개사 내외
- ※ 부산일자리정보망 - 마이페이지 - 업종 계열 1차 전문,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2차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(사업자등록증과 대조시 무관한 기업 배제)
- 제외분야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분야

##### •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(행안부 지침)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,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(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
- 해당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(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# ○ 청년 (※참여기업 선발 이후 진행)

-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
- 지역 요건 : 사업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유지  
(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)
- 업무내용 : 채용기업의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관련 실무 업무  
(ex. 패키지, 제품, 시각디자인, 웹디자인, UI 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직무 채용 必)

#### □ 지원내용

##### ○ 인건비 지원 : 1인당 월 180만원 지원 (연봉28백만원 이상시 지원 가능)

- ※ 1개사 1인을 원칙
- ※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

- 지원금은 근로계약서 월액보수(기본급)을 대상으로 함  
(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, 퇴직충당금, 수당 등 미지원)
- 역량강화 교육(기본교육, 직무교육) 지원(필수참여)
- 간담회, 네트워킹 및 컨설팅 등 기타지원

□ 지원조건(※ 청년 임금 연봉28백만원 이상 시, 지원가능)

- 청년 임금의 인건비 지원금(연 2,160만원)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장 자부담
  - 인당 월 180만원 지원 그 외 금액 사업장 자부담

• 청년의 근로 조건

-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(기업)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
- 1유형 참여자는 근로기준법(제2조)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,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(3월미만 고용된 근로자)가 아님. 이에 따라 청년들은 세무신고 대상이 됨
- 청년들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
-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, 청년과 사전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
-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,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,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
- 1유형은 월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, 사업장 특성과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

\*근로계약 전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청년에게 고지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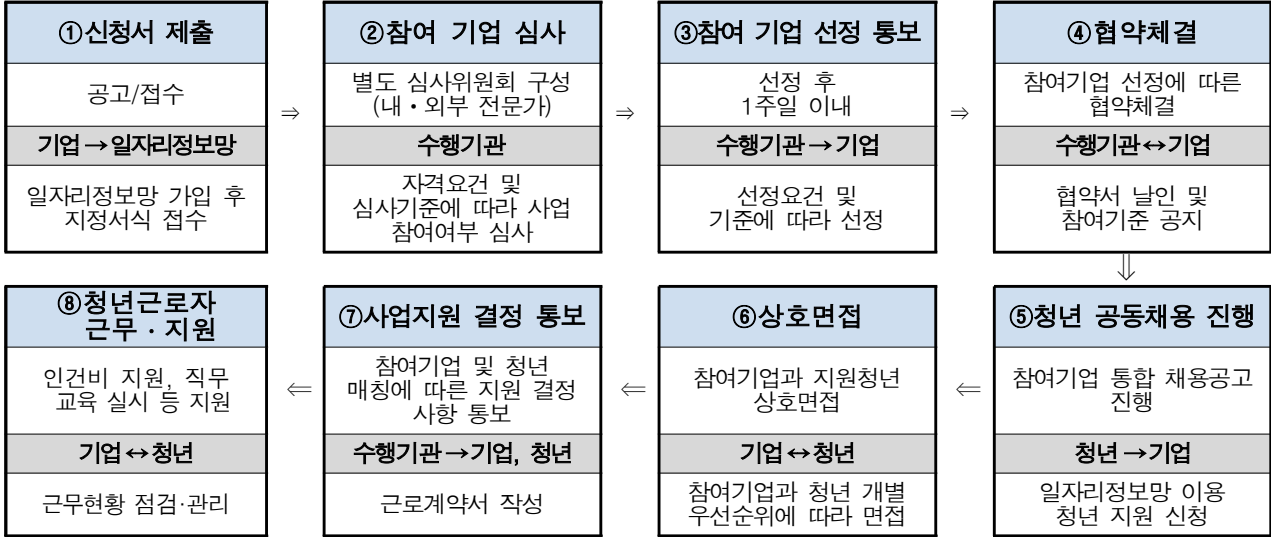
□ 지원금 집행

- 지원금 지급시기는 매월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증빙자료(참여기업→수행기관 제출) 검토 후 참여기업 통장으로 입금
  -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,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
  -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(청년의 퇴사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중도포기서 제출 必)
  -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,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음
  -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·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
  -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및 자료요청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(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,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)

•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

- 출근부, 급여대장, 급여이체확인증 등 급여 증빙서류, 지원금신청서, 통장사본,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(추가 사항 발생 시 메일 발송 예정)

## IV 추진절차



## V 평가방법 및 기준

□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

- 위원구성 : 내·외부 전문가 4인 내외
- 심사방법 :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, 대면심사
- 심사기준(안)
  -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인 기술 기반 창업기업 여부, 기업일반현황, 사업아이템 개요, 청년인재 고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·선정
  - 서류평가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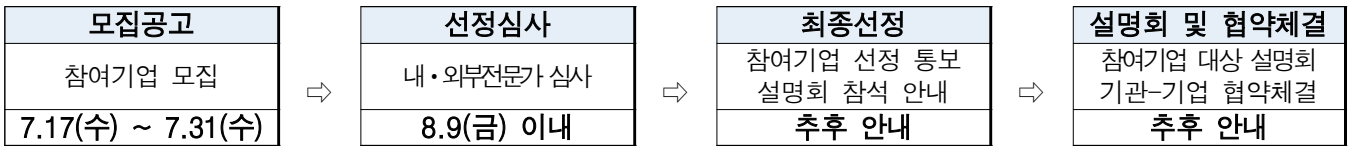
평가항목	배점	심사내용	비고
기업역량	25	기업 근로자수, 매출액, 투자금액, 기업 추진 사업의 적정성 등	
기술가치	25	보유 기술/아이템 우수성 및 차별성, 성장가능성 등	
근로조건	25	담당 업무내용의 타당성, 근로조건·복리후생 등	
채용의지	25	지원 필요성, 활용방안, 정규직 채용 여부, 기업 성장기여 가능성 등	
합 계	100점		

- 발표평가 기준

평가항목	배점	심사내용	비고
기업역량	30	디자인기반 기술혁신사업 관련분야 적합성, 보유기술/아이템 우수성 등	
재정건정성	30	재무구조 안정성, 매출성장 역량 등	
지속가능한 고용	40	고용지속성, 근로조건, 정규직 채용 여부 등	
합 계	100점		

참여기업 선정

- 참여기업 선정 :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
  - ☞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추가 실시 가능
- 지원인력 : 1개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, 최대 2인 까지 지원
  - ※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가능
- 선정정차 및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 VI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참여기업 신청

- 신청기간 : 2024년 07월 17일(수) ~ 07월 31일(수) 18:00까지
  - ※ 신청업체 미달 시 재공고 예정
- 신청방법 : 부산일자리정보망([www.busanjob.net](http://www.busanjob.net)) 홈페이지 → 청년부산잡스 → 「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」 → 사업신청-취업지원 '기업' → 「Boost-up 新기술 디자인 청년일자리지원사업」 기업 신청하기
- 신청서류(제출서류)
  - 참여기업 신청서(붙임 서식)
  -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동의서(붙임 서식)
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-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

## □ 주의사항
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
- 증빙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하고 제출
- 향후 결정사항은 개별통보하며,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
- 정부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동 될 수 있음
-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“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”시행지침 (행정안전부)에 따름

## Ⅶ 문 의

- 운영기관 :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
- 문 의 처 : 전화 051-790-1088, E-mail joyechoi@dcb.or.kr
- 운영시간 : 09:00 ~ 18:00 (주말·공휴일 제외)

- 붙임 1. 참여기업 신청서 1부.  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 끝.